

< 정 오 표 >

1. 정정대상 투자신탁 : 키움 프런티어 법인용 MMF 제3호[국공채]
2. 효력발생예정일(변경시행일) : 2015.09.17
3. 주요 정정사항 :
 - 투자신탁 보수율 변경
 -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법 개정사항 반영

[규약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30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	①~② (생략) ③ <u>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산정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·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 ④ <신설>	①~② (현행과 동일) ③ <u>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.</u> ④ <u>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산정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·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
제39조(투자신탁 보수)	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(이하 "투자신탁보수"라 한다)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2.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3.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4. <신설> ② (생략)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금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5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.8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 4. <신설>	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(이하 "투자신탁보수"라 한다)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2.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3.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4. <u>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</u> ② (현행과 동일)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금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45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.75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 4. <u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</u>
제44조(투자신탁의 해지)	① (생략)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	① (현행과 동일)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	1.~4. (생략) 5. <신설> ③~④ (생략)	1.~4. (현행과 동일) 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③~④ (현행과 동일)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[일괄신고서/투자설명서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	운용현황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
제2부.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2) 종류형 구조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집합투자업자보수: 연 0.05% - 판매회사보수: 연 0.18% - 신탁업자보수: 연 0.02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집합투자업자보수: 연 0.045% - 판매회사보수: 연 0.175% - 신탁업자보수: 연 0.02% - 일반사무관리보수: 연 0.01%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등에 관한 사항		작성일 기준으로 갱신
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3)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4)운용자산규모		작성일 기준으로 갱신
제5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1)의무 해지	<신설>	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

[간이투자설명서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1부. 5. 운용전문인력		운용현황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
제1부. 6. 투자실적 추이		작성일 기준으로 갱신
제2부. 1. 보수 및 수수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집합투자업자보수: 연 0.05% - 판매회사보수: 연 0.18% - 신탁업자보수: 연 0.02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집합투자업자보수: 연 0.045% - 판매회사보수: 연 0.175% - 신탁업자보수: 연 0.02% - 일반사무관리보수: 연 0.01%
제3부. 1. 요약재무정보		작성일 기준으로 갱신